

단합된 지혜로 현실적응하여 위기를 극복하자

한신공영주식회사

137-907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공영빌딩 4층 / 전화 02)3393-3266 / 전송 02)3393-3269 / 담당 : 과장 안상희

문서번호	마케 550-10994	선결		지	
발송일자	2018. 12. 04.	접	일자	시	
수신	대한체육회 교육기획과		시간	결	
참조	업무 담당관	수	번호	재	
		처리과		공	
		담당자		람	

제 목 인천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 추천 및 홍보 협조의 건

1. 귀사(청, 처, 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2018년 12월 13일(목)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인 검단신도시에 총936세대 규모의 검단신도시 AB6블록 한신더휴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오니 검단신도시 AB6블록 한신더휴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및 배정내역을 확인하시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해당 대상자 명단을 12월 17일(월) 12:00까지 아래의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예비)의 명단 및 주택형을 확정하여 특별공급 접수 [2018년 12월 19일(예정)] 전까지 금융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함.

4. 우수선수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대한체육회 교육기획과]

구분		주택형 (약시표시)	총 공급 세대수	일반 (기관추천) 세대수	세대수				대상자 (① + ②)
전용면적	공급면적				① 확정자		② 예비자		
					인천광역시	수도권	인천광역시	수도권	
74.2658㎡	95.4209㎡	74A	250	25	1	-	-	-	1
74.4161㎡	96.2545㎡	74B	74	7	-	-	-	-	-
84.3400㎡	108.3716㎡	84A	246	24	1	1	1	-	3
84.1588㎡	108.3779㎡	84B	366	36	1	1	1	-	3
계			936	92	3	2	2	-	7

5. 인천광역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자가 우선함.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는 해당 거주지역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 원칙을 준수하여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당 사업지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대상자 선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 3)
 - “세대주, 세대원, 세대원의 배우자”에서 청약신청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으로 개정
- 2) 개정 이후 분양권 등의 소유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제외(개정안 제2조제4호)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3)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 제외(개정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5항)
 -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대상을 성년자로 한정 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간주(제2조제3호)하여 공급대상에 포함
- 4)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개정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 가족관계등록부를 세대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 일정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당 사업지 해당)에서는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
- 5) 주택공급계약서에 전매제한기간 표시 의무화(개정안 제59조제3항)
 -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7.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금융결제원(www.ap2you.com)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오니 청약신청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5조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하여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9. 아울러 회신기한까지 대상자 명단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안내해 주시어 공급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번지 일원

T. 1522-9345, F. 031-996-5398

나. 당 당 : 검단신도시 AB6블록 한신더휴 팀장 권현석

다. 연 락 처 : HP. 010-3737-5949

라. 이 메 일 : apt.2u@daum.net

마. 홈페이지 : www.gd-thehue.com

첨 부 :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끝.

대 표 이 사 태 기 전

